

학교 생활 인권 규정

■ 매일 새롭고 스스로를 돋우며
함께 어울리는 꿈의 배움터 ■



안전인권교육부

송 신 여 자 고 등 학 교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6
제2조(목적) 6
제3조(적용근거) 6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6
제5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제6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6
제7조(학습에 관한 권리) 6
제8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7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7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7
제11조(사생활의 자유) 7
제12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7
제13조(정보에 관한 권리) 7
제14조(양심·종교의 자유) 8
제15조(의사표현의 자유) 8
제16조(자치활동의 권리) 8
제17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8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8
제19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8
제20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8
제2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9
제22조(급식에 관한 권리) 9
제23조(건강에 관한 권리) 9
제24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9
제25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9
제26조(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9
제27조(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9

제3장 학생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교내생활

제28조(근태상황) 9

제29조(교육활동)	10
제30조(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존 활동)	10
제31조(소유물 관련)	11
제32조(생활예절)	11
제33조(교무실출입예절)	11
제34조(화장실 이용)	11
제35조(도서관 이용)	11
제36조(보건실 이용)	12
제37조(급식 질서)	12
제38조(기타 교내외 집회활동)	12
제39조(동아리 활동)	12
제40조(휴대전화 사용 등 정보통신 윤리)	13
제41조(가정-학교간 의사소통)	13
제42조(소지품)	14
제43조(주변활동)	14

제2절 용의복장

제44조(용모)	14
제45조(복장)	14

제3절 교외생활

제46조(교외생활)	15
------------------	----

제4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제47조(보호자의 정의)	16
제48조(보호자의 권리)	16
제49조(보호자의 의무)	16
제50조(금연교육의 의무)	17
제51조(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17

제5장 학생자치회

제52조(목적)	17
제53조(명칭)	17
제54조(회원)	17
제55조(권리와 의무)	17
제56조(금지활동)	18
제57조(협약·지원사항)	18

제58조(승인)	18
제59조(학생자치회 임원)	18
제60조(부서)	18
제61조(직무 및 선출)	18
제62조(임기)	18
제63조(해임)	18
제64조(대의원회)	19
제65조(운영위원회)	19
제66조(학년자치회)	19
제67조(학급자치회)	19
제68조(학생선거관리위원회)	20

제6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69조(안전지도)	22
제70조(진로지도)	23
제71조(교외생활지도)	23
제72조(교육별의 종류)	23
제73조(교육별의 기준)	23
제74조(교육별의 대상)	23
제75조(보호자의 책임)	23
제76조(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23

제7장 학생생활교육규정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7조(목적)	24
제7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24
제79조(심의의결)	24
제80조(진술권 보장)	24
제81조(학교 내 재심청구)	24
제82조(기록 및 사무처리)	24

제2절 선도

제83조(명칭)	25
제84조(목적)	25
제85조(선도 원칙)	25

제86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24
제87조(선도의 방법)	24
제88조(선도처분 기준)	26
제89조(심의 절차)	27
제90조(심의 확정)	28
제91조(선도내용의 통보)	28
제92조(선도 유보)	28
제93조(선도 경감)	28
제94조(학교장 재심의 요구)	28
제95조(재심의 요구(학교단위))	28
제96조(재심의)	28
제97조(재심의 조치)	28
제98조(도교육청 재심청구)	28
제99조(결과 처리·열람)	28
제100조(징계 경감 및 선도 불이행)	28
제101조(휴연학생의 선도처분)	29
제102조(자격상실)	29
제103조(선도처분 양정 기준)	29

제8장 규정의 개정

제104조(목적)	31
제105조(적용범위)	31
제106조(용어의 정의)	32
제107조(위원회 구성)	32
제108조(위원회 운영)	32
제109조(개정안 발의)	32
제110조(검토 및 의견수렴)	32
제111조(심의 및 결정)	32
제112조(공포 및 정보공시)	33
제113조(연수 및 교육)	33
제114조(기타)	33
제115조(학생의 인권보호)	33

< 양식 및 서식 목차 >

<양식1> 전교 학생자치회 조직표	34
--------------------------	----

<양식2> 선도처분 학생 자기행동 이행계획서	3
<양식3> 학부모내교통지서	36
<서식1> 자기변론서(학생)	37
<서식2> 참고인 확인서(목격자 등)	38
<서식3> 사실 확인서(교사)	39
<서식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40
<서식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44
<서식6> 의견서	42
<서식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43
<서식8> 조치 결과 통지서	44
<서식9>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45
<서식10> 재심 청구서	46
<서식11> 사회봉사 의뢰서	47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8
<서식13> 특별교육 의뢰서	49
<서식14>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	50
<서식15> 위(Wee)클래스 상담 신청서	5
<서식16>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52
<서식17> 봉사활동 확인서	53
<서식18>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54
<서식19> 상담 일지	55
<서식20> 추수 지도 상담카드	56
<서식21> 심층 상담 카드	5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송신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1.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학생은 학교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의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3.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학생이 임신하였거나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8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학생자기주도 활동,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학교로부터 학생자기주도 활동, 방과후 학교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9조 [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받지 않는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7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1조 [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2. 학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 받지 아니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4.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40조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받을 수도 있다.
5. 학생은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의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13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5.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15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교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
3.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함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활동의 권리】

1. 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된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2.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3.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동아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6.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7.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 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고, 제·개정된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3.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

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제18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위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22조 【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24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되며, 선도처분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된다.

제25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수련회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3.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전

입학 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26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1. 학생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생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2. 학생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학생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교내생활

제28조 【근태사항】 학사일정에 따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또는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과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회, 종례, 학급행사 등 학급단위 활동이나 체육대회, 예술제 활동 등 학교단위의 행사활동에 허락 없이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3. 해당 학급 담임교사 또는 특별실 담당교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타 학급 학생들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 금지된 장소를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담당교사가 출결을 확인할 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리대답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여 체험학습 등 야외 교육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등학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경우 지도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7. 학생 현장 교육 시에는 해당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기타 출결상황 관리는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교육활동】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즉시 자리에 앉아 수업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과학실, 어학실 또는 체육관, 운동장 등 정규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경우,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이동하여 수업종이 울리는 즉시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4.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시작되면 모든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담당교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므로 담당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5.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6.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해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타 교과 공부, 만화 또는 동영상 보는 행위, 껌을 씹거나 또는 음식물 취식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다.

7. 소란행위, 장난, 노래, 돌아다니기, 잠자기, 무단 화장실 출입 등 수업 또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8.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필기, 발표, 질문에 대한 대답 등)해서는 안 된다.
9.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좌석을 이용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중 상습적인 잠자기 또는 소란을 야기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격리 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1.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시 무단 불참하거나, 소란 또는 전자기기 사용 등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12. 학생자기주도 활동 및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생 및 학부모의 참가 동의하에 실시한다.

제30조 【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전 활동】

1. 특별실을 이용하여 정규 교육활동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특별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사물함 등 모든 시설물 또는 교재, 교구는 공공기물이므로 손상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용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원래 있던 장소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4. 담임 또는 담당교사에 의해 지정된 주변 또는 도우미 학생은 학급별 또는 부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등하교하여 비품관리, 청소, 정리정돈 등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5. 본인에게 지정된 특별구역에 대한 청소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교사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건물내외에서 침을 뱉거나, 껌, 휴지, 캔, 음식물, 과자봉지 등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7. 교실 또는 복도 등 건물 내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버려서는 아니 되며, 만약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8. 책상, 의자, 교실, 복도 등 공공기물에 낙서하거나 훼손, 파손해서는 안 된다.
9. 과수의 열매 절취, 수목 훼손 또는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 【소유물 관련】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또는 과도한 금품 등을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져 왔을 경우 그 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자신의 소유물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소유물도 소중함을 인식하여 절대로 손을 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3.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써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 허락 시간이 지나자마자 돌려주어야 한다. 허락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로 간주될 수 있다.
4. 타인의 소유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나 안전인권교육부 담당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타인의 소유물을 습득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절도로 간주될 수 있다.

제32조 【생활예절】

1.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타인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학교폭력전담 기구에 회부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2.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가 누구이건 가벼운 인사로 서로 예절을 표시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본예절을 습관화 하도록 한다.

제33조 【교무실 출입예절】

1.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출입을 삼간다.
2. 출입 시 항상 입구에서 목례를 한다.
3. 출입 전에 용의, 복장에 유의한다.
4. 시험출제기간, 시험기간, 채점기간 중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34조 【화장실 이용】

1. 공공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깨끗이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할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3. 화장실에서 말다툼, 폭력, 흡연 등 본래의 목적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5조 【도서관 이용】 도서관 활용을 장려하고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 도서를 이용할 때 정숙을 유지하고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2. 대출받은 도서는 규정된 기간이내에 반납하여 타인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도서의 훼손, 분실 또는 미반납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36조 【보건실 이용】 적절한 치료를 받고 타인이 함께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건실 이용시간은 정규 일과시간과 같다.
2. 보건실에 오는 학생은 학번, 성명 및 목적과 증상을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하여 보건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보건실 내에서는 조용히 말하고 평소 질병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미리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아파서 보건실에 와야 할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보건실 이용 전 보건실 이용 확인증을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6. 보건교사의 허락 없이 보건실 의약품 등 물품 또는 약품을 만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반드시 부축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혼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몸이 많이 불편하여 안정을 필요로 할 경우 보건교사의 확인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다.
9. 보건교사는 학생이 보건실 입실 후 1시간 이상 안정 또는 처치를 하여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 및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병원진료 또는 귀가 조치한다.
10. 같은 시간에 같은 학급 학생을 동시에 입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급식실서】 급식실내외에서 음식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취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년별로 지정된 급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먼저 온 사람 순서에 따른 선착순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해치는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
3. 급식실 출구와 입구를 구분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위한 담당교사의 '우선 급식중' 없이는 우선 배식을 받을 수 없다.
5. 남은 음식물을 식탁이나 바닥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급식실에서 제공된 음식물 이외에 첨가물이나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7. 급식실내 식기류 등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파손 또는 훼손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8. 식사 후 식판, 수저 등 식기는 남은 음식물을 처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급식실내외에서 식사 전, 중, 후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소란, 다툼, 식판 소음)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급식실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급식실내에서 취식하여야 하며 급식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1. 급식도우미는 '급식실 봉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봉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이행한다.
12. 학생은 급식 지도교사의 질서지도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제38조 【기타 교내의 집회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단체회합을 할 때
2. 실의 활동 또는 신체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타 학교 학생 또는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교육활동 이외에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토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에 학교에서 단체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39조 【동아리활동】

1. 건전한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통하여 개성을 발현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한 대학입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인성교육을 실현한다.
2.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건전한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동아리의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나. 동아리는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요청과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구성한다.
 - 다. 동아리는 고등학생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활동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 라.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과시간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한다.
 - 마.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동아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해체할 수 있다.
 - 바.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 주관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건전한 교외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사.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자.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 또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차.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진로창체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 카.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의 일부이고 학교의 본래 목적인 학업을 소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 타. 동아리 부장은 매년 3월초에 연간활동계획서, 개인별 가입신청서, 동아리 학생명단 등 기타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휴대전화 사용 등 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교육활동, 학생지도 내용이나 사적인 활동 등을 녹음,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2.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며,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악성 댓글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불법 유해 매체물의 사용,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기기를 통하여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 등 타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타인의 ID(명의) 도용, 개인정보 열람, 이용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정보관리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구입하여서는 안 된다.
- 과학실, 도서관, 컴퓨터실 등 특별실의 교육활동용 컴퓨터를 개인용도(게임, 미니홈피, 이메일 송수신 등)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수업 및 교육활동 중에는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수업 및 교육활동 중 컴퓨터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 정보 통신 기자재를 손상,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손망실시 개인이 그 책임을 진다.
-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는 학칙에 의거 교육활동 전에 학급별로 학교에서 제공한 보관함에 수거하여 보관한 후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돌려준다. 단, 긴급 시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정기고사, 학력평가 등 고사 중 핸드폰 등 개인 통신기기 소지는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가정-학교간 의사소통】 학교와 가정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성적표, 가정통신문, 납부금 고지서 등 각종 전달사항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각종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전달한 후 회망서, 의견서, 신청서 등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그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사실을 왜곡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제42조 【소지품】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는 각 호의 소지품소지를 금지한다.
 - 가.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나. 성냥,ライター,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다. 도박에 관련된 물건
 - 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안전인권교육부교사)가 진행하고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결과를 보고한다.
-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실시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 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단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결과를 보고한다.

제43조 【주변 활동】 주변 활동(교내 봉사활동)학생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주변 활동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주변 활동 학생은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단, 봉사기간 및 주변의 제의 범위는 담임교사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제2절 용의복장

제44조 【용모】

-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
- 부정행위 방지 및 급식위생을 위해 시험시간, 급식시간에는 머리를 묶는다.
- 과마나 염색, 헤어제품을 사용한 과도한 머리 모양의 변형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제한할 수 있고 탈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화장과 액세서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제한할 수 있고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5조 【복장】

- 상의
 - 가. 상의 왼쪽에 학교 보람을 달도록 한다.(보람은 완전 부착한다.)
 - 나. 블라우스의 리본은 풀이지 않게 단정하게 한다.
 - 다. 동복착용 시 반드시 교복조끼를 입는다.
 - 라. 교복상의에 기타 장식을 붙여서는 안 된다.
 - 마. 하복상의 안에 면티를 입을 경우 교복 소매 밖으로 면티가 나오면 안 되며, 단추를 풀어서도 안 된다.
 - 바.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 등)의 계절별 조합을 맞추고 착용시기는 학생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 동절기에는 등·하교 시 동복자켓, 가디건을 착용하고 보온성이 좋은 후리스, 후드집업, 외투 착용은 가능하다.
 - 아. 동절기에는 교내에서 동복 자켓과 가디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착용하고, 후리스, 후드집업, 외투 착용이 가능하다.
 - (단, 모자가 달린 후드집업 착용 시 모자를 쓰면 안 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함.)
 - 자. 하절기에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하 의
 - 가. 치마의 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정한다.(치마는 밀착되지 않게 입는다.)
 - 나. 바지는 치마와 같은 감으로 하고 회색으로 한다.(치마,바지 선택가능)
 - 3. 스타킹

가. 스타킹은 살구색계열, 커피색계열, 검정색 학생용 스타킹이 가능하고 신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나. 레깅스 착용 시 목이 긴 양말을 신도록 한다.

4. 신발

가. 실외화는 운동화, 구두 중 목이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
나. 실내화는 안전상 앞이 뚫린 슬리퍼를 금한다.

5. 가방

가. 양어깨에 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크기는 최소 A4파일이 들어가서 가방이 잠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6. 명찰

가. 교복의 명찰은 호주머니 형으로 교내에서는 반드시 교복 상의 및 생활복에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나. 명찰에 스티커등 악세사리를 붙이면 안된다.

제3절 교외생활

제46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규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제47조 【보호자의 정의】 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48조 【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할 때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각 실별 배치도와 좌석배치도의 부착 또는 교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교무실 및 행정실의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학생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처리,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6. 보호자가 제출하는 민원 및 각종 서류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7. 다수의 보호자가 동시에 민원업무를 신청할 시 선착순 원칙에 의거 처리한다.
8. 불친절·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화서면 등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통지 받을 수 있다.
9. 보호자는 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0. 보호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 급식모니터 요원, 자원봉사단 활동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9조 【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 학교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교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과 상담 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4. 보호자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학생의 숙제, 준비물 등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학교생활규정을 학생과 함께 정독을 한 후 그 결과지를 학생, 학부모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7. 학생의 교복착용, 용의복장 등을 학교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교시켜야 한다.
8. 질병 등 긴급시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시간 내에 등교시켜야 한다.
9. 학생의 태만한 행동,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0. 보호자는 자녀가 ADHD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 치료를 하면서 학습방법이나 생활태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1. 학생의 성적 향상, 진로진학, 학교생활, 학생복지, 학생징계 등 기타 학생과 관련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12. 운영위원, 급식모니터 요원,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 자원봉사단 활동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따른 어떠한 대가나 이익도 보장받지 않는다.

제50조 【금연교육 의무】

1.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금연을 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학생 소지 및 사용금지 물품인 담배,ライター 등 흡연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흡연으로 인한 선도를 위하여 상담, 금연서약서 작성, 금연 동영상 교육, 직접 또는 간접흡연 피해사례 교육, 금연일기 작성, 금연캠페인, 담배꽂초 줍기, 금연침 시술, 위탁 금연교실 등의 운영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제51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1. 보호자는 학생이 청소년보호법상 명시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당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학생(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제52조(목적) 이회는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명칭) 이회는 송신여자고등학교 전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54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사회 봉사이상의 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5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6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 할 수 없다.

제57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사항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각종 캠페인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58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9조【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장 1인,
2. 자치회부회장 2인(1,2학년 각1인)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각 1인(단, 우애부는 차장 2인)이며, 부원의 수는 학생회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60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관련 사항
2. 총무부 : 서무, 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3. 예·체능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부 : 사진, 홍보, 문서 및 SNS 등에 관한 사항
5. 우애부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캠페인 실시

제61조【직무 및 선출】

1. 직무 :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자치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 나. 자치회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선출 :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자치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나. 임원 선출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제62조【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2학기~차기년도 1학기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라도 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제63조【해임】 학생자치회 임원이 비교육적 행위로 학생 교육 활동에 위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64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 가.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부회장 및 각 학급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 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나. 학생자치회 대외활동
 - 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라.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한 제출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가.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나. 정기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 다.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상의 경우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 6.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전에 안전인권교육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운영위원회】

-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자치회부회장, 각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나.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중요한 의안
- 3. 회의
 - 가.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안전인권교육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 소집한다.
 - 나.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학년자치회】

- 1. 구성
 - 가. 학년자치회는 각 학급 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학년장
 - 1) 1학기: 1학년(학급자치회 1반 회장), 2학년(학생자치회 2학년 부회장), 3학년(학생자치회 회장)
 - 2) 2학기: 1학년(학생자치회 1학년 부회장), 2학년(학생자치회 2학년 부회장), 3학년(전 학생자치회장)
- 2. 기능
 - 가. 학급자치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나.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중요한 의안

제67조 【학급자치회】

- 1. 개최 :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학급자치회 회의를 개최한다.
- 2. 조직
 - 가. 학급자치회 회장 1명, 학급자치회 부회장 1명을 둔다.
 - 나. 학급 자치 활동 운영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단, 학급 고유성 고려 운영 가능)
 - ① 총무부 ② 학습부 ③ 체육부 ④ 생활안전부 ⑤ 봉사부 ⑥ 기획부
- 3. 자격

-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다. 선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는 자(초중등교육법 31조 2,3,4항)
- 4. 부서의 임무
 - 가. 총무부 : 서무, 회계, 홍보활동 등
 - 나.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독서활동 등
 - 다.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라. 생활안전부 : 학급 질서 및 실내정숙과 용의 복장, 고운말 쓰기, 학교정화, 교칙준수 등
 - 바.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사. 기획부 : 활동의 기획, 토의안건 수집 결정, 자율학습 관리 등
 - 5. 임원의 임무
 - 가. 학급자치회 회장 : 학급 자치활동 운영 및 활동을 통괄하며 담임을 보좌한다.
 - 나. 학급자치회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다. 부서장 : 각 부서 활동계획 수립 및 행사를 주관한다.

제68조 【학생 선거관리위원회】

- 1. 목적 및 임기 : 학교장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 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가. 안전인권교육부장, 학생자치회 지도교사와 학생자치회장, 자치회부회장, 총무부장, 정보부장 등 학생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장은 학생자치회장으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다. 선거 운동 관리에 관한 일
 -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마.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당선증 발급)
 - 바.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처분 (학생은 제외)
 - 사.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4. 선거일자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14일 이전에 각 호 사항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 한다.
 - 가. 선거일자
 - 나. 후보자 자격 기준 :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생자치회 총학생회장, 부회장(학년 회장, 부회장)
 - 가) 선거공고일 현재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나)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 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는 자.
 - (초중등교육법 31조 2,3,4항)
 - 2) 회장, 부회장 선출은 매년 2학기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여 2학기 첫날부터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다. 등록일자 및 준비물
- 5.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 희망자는 각 호 사항을 준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안전인권교육부)에 등록한다.

가. 자기이력서(학년, 반, 거주지)

나. 사진 1매(3cm x 4cm)

다. 입후보 지원서

6. 입후보자 자격 인준 :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인준을 결정 및 등록 후 24시간 이내 본인에게 통보한다.

7. 학생자치회 임원 등록 무효 및 사퇴

가. 입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규정 위반일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8. 선거활동 및 소견 발표

가. 입후보자는 자격인준을 통보 받은 후 개별적 교내 선거 활동을 하며 후보자 소견발표는 1회 실시한다.

나. 선거 활동 시 유인물 게시물 사용은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후보자 기호 선정

가. 자격 인준을 받은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기호에 의거 게시판에 공고한다.

10.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운동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시 1차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입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 2) 선거권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살포한 경우
- 3)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
- 4) 학부모를 동원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경우
- 5)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경우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투표 장소 및 투표, 개표 인단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개표인단 구성은 학생자치회 간부학생을 중심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투표장소 설치 및 기타 투표 종료 후 개표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12. 당선자 공고

가.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개표 후 24시간 이내 학교 게시판에 당선인을 공고한다.

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13. 학생자치회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3)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4. 학생자치회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가. 선거와 당선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기타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69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학생 생활지도와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매일 학교 앞 교통 안전지도를 교사가 직접 실시한다.

제70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행한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진학상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71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도에 노력한다.

제72조 [교육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교육 벌을 줄 경우, 일체의 체벌(體罰) 금지하며, 학업 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등을 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교육벌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교육 벌 규정으로 정하

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4조 【교육벌 대상】 교육 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부과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량하여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
5. 기타 교칙을 위반할 때

제75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76조 【교사의 교육활동보장】

1.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교사에게는 수업권, 학생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교육활동 보장권 등이 있다.
2. 1항의 교사의 권리가 학생에 의해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교사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규정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7조 【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학생생활의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 : 교감(운영 총괄)이 위원장이 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안전인권교육부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3. 위원 : 인문과학부장, 123학년부장, 상담교사, 교내외생활지도담당교사로 구성하고,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을 위해 간사를 두며(안전인권교육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 주무는 안전인권부장이 된다.
4. 학생생활 중 제기된 학생사안(분쟁)등을 심의하고, 사회봉사이상의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79조 【심의·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후 교육청 '심의위원

회'에서 처리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처벌(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각 학생생활교육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라.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마. 교내봉사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이 주관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5.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내용을 안내한다.

제80조 【진술권 보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선도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단, 보호자 의견 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 【학교 내 제심청구】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심청구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제심외는 7일 이내에 한다.

제82조 【기록 및 사무처리】 안전인권교육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가 심의의결 사항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절 선도

제83조 【명칭】 이 규정은 송신여자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이라한다.

제84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에 의거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지닌 바람직한 학생을 육성하고자 한다.

제85조 【선도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86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선도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누적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선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퇴학처분

제87조 【선도의 방법】

1.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생활교육
 - 가. 1단계 : 약속단계(학생과 교사 간 생활 실천 약속,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책임제 운영)
 - 나. 2단계 : 약속준수단계(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준수 캠페인 전개, 비폭력대화, 자치활동활성화 등)
 - 다. 3단계 : 선도단계(사안에 따른 단계적 선도적용, 교육적 방법으로 선도 조치)
2. 교사의 훈육 및 훈계 지도에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상 선도 사항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선도하기가 곤란한 경우 선도 단계 이전에 학생에게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지도할 수 있다.
3.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프로그램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 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2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체 필요 시
	3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4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과제 중심 활동	5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6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7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8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9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10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참여 중심 활동	11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2	웰빙 도우미 활동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13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4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5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6	Wee 센터 활용하기	이용 방법, 활동 내용
	17	미술 치료 프로그램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18	연극 치료 프로그램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19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시간, 점심시간, 귀가시간)
	20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21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규정 약속	22	학생 자치법정	학생 자치법정의 조직, 운영

제88조 【선도처분 기준】 선도 처분은 방과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과중에 실시할 수 있다. 선도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기관 봉사활동 이수실적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선도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공휴일 및 교사기간은 선도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 만큼 순연된다.

1.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전인권교육부장이 총괄하여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의거 학교 내의 봉사를 실시한다.
2. 사회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봉사 기관에 위탁하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 다.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라. 사회봉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마. 위탁이 곤란할 경우 5일 이내 기간 동안 안전인권교육부장이 총괄하여 안전인권교육부에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에 의거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 다.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라.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마.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수실적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바. 위탁이 곤란할 경우 5일 이내 기간 동안 안전인권교육부장이 총괄하여 안전인권교육부에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에 의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다.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에서 퇴학처분 선도가 결정되고 학교장이 조치하기 전 해당 학생은 10일 이내로 가정학습(출석정지)을 하게 할 수 있다.(가정학습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 나. 학교장은 제 4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89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개최 통지를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최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90조 【심의 확정】 학생 선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1조 【선도 내용의 통보】

1. 선도 내용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2.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제심의 신청, 재심청구,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선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3조 【선도 경감】 학교장은 선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사안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4조 【학교장 제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 【제심의 요구(학교단위)】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 【제심의】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제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제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1. 제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제심을 실시한다.
2. 원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제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97조 【제심의 조치】 위원회 제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결재하고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제98조 【도교육청 재심청구】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 【결과 처리·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0조 【징계 경감 및 선도 불이행】

1. 징계를 받은 학생이 뚜렷한 선행이나 모범을 보이는 경우에는 안전인권교육부장의 상신과 학교장의 승인 하에 지도단계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 징계해제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징계기간 중 미인정외출,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처분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불이행 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01조 【흡연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1.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교내·외에서는 일체 금연을 실시한다.
2. 흡연 적발 시에는 별도의 내부 기준을 정해 징계한다.
3. 위탁 금연교실 입실시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으로 한다.
4. 흡연학생 선도 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1] <흡연학생 선도 처분 기준표>

적발횟수	선도 처분	지도 내용	비고
1회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운영	학부모·학생 금연상담, 교내 금연프로그램 시행 학교 내 봉사활동(학년부 주관)	학 부 모 내 교
2회	학교봉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학교 내 봉사활동 10시간 교내 금연프로그램 시행 또는 Wee 클래스 상담	
3회	사회봉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사회봉사 5일(1일 2시간 이상) 금연침 시술 7회 또는 Wee 클래스 상담	
4회 이상	특별교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위탁 금연학교 특별교육 5일(학부모 동반교육)	

제102조 【자격상실】

1. 학생 자치회 임원 및 학급 임원이 임기 중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선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에 따라 직위를 박탈하고, 후임자를 재선출 한다.
2. 당해연도 학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내외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도의 기준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선도처분의 양정 기준표는 [표1-1]과 같다.
기준표 상의 상승적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의한다.
4. 근태 상황과 인권친화적 생활기록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적용하고, 흡연과 선도처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103조 【선도처분 양정 기준】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선도구분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징지	학 년 퇴 처 분
예결	1	웃어른에게 욕설을 한 학생	○				
	2	교사에게 언행을 불손하게 한 학생		○	○		
준법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4	불순한 행위를 목적으로 흉기 및 불순물을 소지한 자	○	○	○	○	
	5	타인의 물건을 훔친 학생(절취,사취 등)		○	○	○	○
	6	쓰레기 및 침, 땀을 아무데나 뱉는 행위를 한 학생	○				
	7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8	복장 및 두발상태가 불량하여 수차 선도를 받았어도 고의로 고치지 않은 학생	○	○			
	9	사행 행위를 한 학생	○	○			
	10	도박을 한 학생	○	○	○		
	11	교문 및 후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한 학생	○				
	12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13	채무를 고의로 지체하거나 기피한 학생	○				
	14	교내·외에서 고성 방가하여 타인의 지탄을 받은 학생	○				
	15	공납금 및 공금을 유용한 자	○	○			
	1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7	검찰에 송치 후 기소 유예된 학생		○	○		
	18	공·사문서 위·변조 및 부정 사용한 학생		○	○		
	19	경기장 및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학생	○	○			
	20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21	선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2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23	교사의 교육적으로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4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거부 및 불참 학생	○	○	○	○	
	25	교사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한 학생		○	○	○	○
	26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의 교구, 기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킨 학생		○	○	○	
	27	학교 계시물을 허락 없이 훼손하거나 임의로 철거한 학생	○	○			
	28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	○	○	○	○	
	29	사이버상의 범죄 행위 및 유사행위를 한 학생	○	○	○	○	
	30	학교폭력 이외의 폭행사건	○	○	○	○	○

구분	항	내용	선도구분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약 물	31	음주하여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학생	○	○	○		
	32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집 단 행 위	33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단체를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	○	○	○	
	3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5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수 업	36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3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3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39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40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고사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학생			○	○	○
퇴 폐 행 위	41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42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43	불량서적, 불량비디오를 배포한 학생	○	○			
근 태	44	미인정(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계 7일 이상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계산함)	○				
	45	미인정(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계 14일 이상		○			
	46	미인정(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계 21일 이상			○		
	47	미인정(결석, 지각, 조퇴, 결과) 누계 28일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름				
기 타	48	선도내용 이외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어 교육 목적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등의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결정에 따라 선도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104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 을 재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6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7조 [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둔다.

1. 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3명, 학부모대표 2명, 전문가위원 1명, 교사대표 3명 총9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 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9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110조 [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 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1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12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13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 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15조 【학생의 인권보호】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5. 학생은 학생자기주도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학생은 가족, 교육관계, 성적, 선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 받는다.
7.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8.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 성적 출결 등으로 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 자격조건에서는 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봉사 이상의 정계가 없는 자만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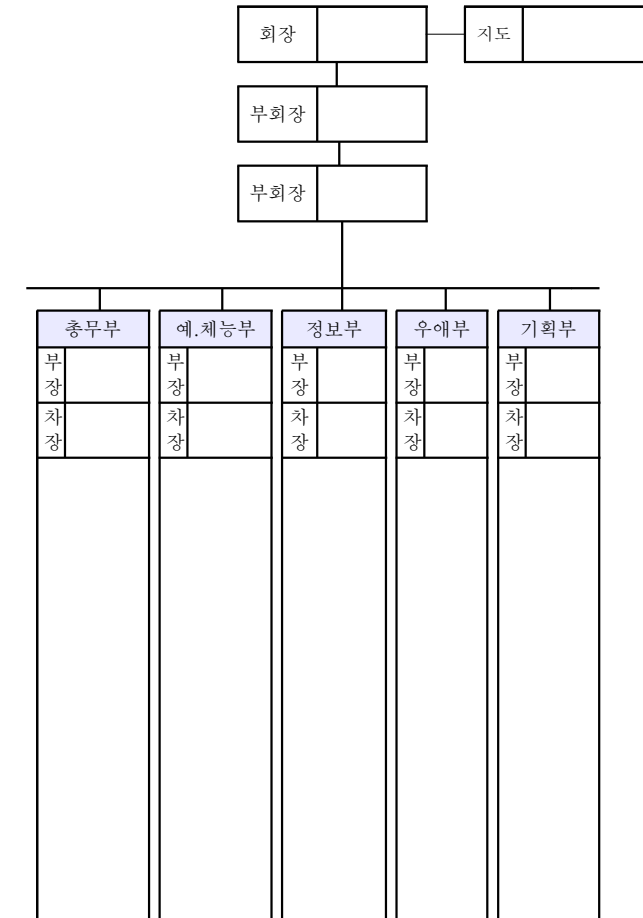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정은 2011년 5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본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2016년 8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양식1> 전교 학생자치회 조직표 양식

학년도 제 대 전교 학생자치회 조직표

지도교사 : () (인)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		전화:		
보호자 전화번호: 부 () 모 ()				
지금까지 힘들었던 점				
내 행동으로 인한 문제들	°			
	°			
	°			
앞으로 변화계획	[단기 목표]			
	①			
	②			
	③			
	[장기 목표]			
	①			
	②			
③				
● 느낀 점 ●				
관련교사 도움말	담임교사	담당교사	부장	교감
학부모 도움말				

학부모 내교 통지서

귀 자녀의 학생생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내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학년 반 번

이름:

내교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내교장소: 학년 교무실 → 안전인권교육부

상담자: 담임교사, 안전인권교육부장

내교사유: 학교생활규정 위반

년 월 일

송신여자고등학교장

자기변론서(학생)

※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__월__일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_____) ② 다른 반 친구 (_____) ③ 기 타 (_____)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학생	(서명)		

참고인 확인서(목격자 등)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__월__일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__월__일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송신여자고등학교장

의견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승신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기피·회피절차의 진행 4. 간사의 사안 설명 5.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6. 학생 자기 변론 7. 보호자 의견 진술 8. 안건심의 9. 의결 10.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조치 결과 통지서

결	인권부장	교감	교장
재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조치결과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결정이유 :
 위반조항 :

20 년 월 일

승신여자고등학교장

————— 결 ————— 취 ————— 선 —————

조치 결과 통지서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조치결과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결정이유 :
 위반조항 :

20 년 월 일

승신여자고등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교 명		연 락 처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학 번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h3>송신여자고등학교장</h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 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반정보(학생) :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연락처
- 일반정보(보호자)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송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Wee)클래스 상담 의뢰서

송신여자고등학교 위(Wee)클래스

1. 의뢰인

성명		관계		연락처	
----	--	----	--	-----	--

2. 학생 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생연락처	
학년/반				학부모 연락처	
의뢰사유	※해당항목에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하세요.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진로 <input type="checkbox"/> 성격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일탈 및 비행 <input type="checkbox"/> 심리·정서 관련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사용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input type="checkbox"/> 자해·자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유롭게 기술				
행동특성 및 현재 개입사항	-이전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담임, 부장 또는 교과교사의 상담 및 지도 내용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의뢰인(신청자)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영역을 적어주세요				
상담시 참고사항	-가족관계 등 상담에 참고할 내용을 적어 주세요				

의뢰 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

학교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고자 수업시간에 상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두 동의 <input type="checkbox"/>	서면 동의 <input type="checkbox"/>
20 년 일 학부모 성명 :	학부모 동의서 제출

위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의뢰인 및 학생,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근거)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의뢰인 : (성명)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30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업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송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봉사활동 확인서

소 속 :
학년반 :
성 명 :

위 학생은 본원에서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시간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 봉사활동 내용	예) 청소, 식사 도우미 활동 등
------------	--------------------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 단위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했을 경우는 학교장 직인 날인

상담 일지

	계	상담부장	교감	교장
결재				
대상자	학년 반 번 ○○○	날짜	20	
구분	상 담 내 용	지도교사 조언 내용	지도교사 확인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				
구분	상 담 내 용	보호자 조언 내용	보호자 확인	
가정생활에서 달라진 점				

추수 지도 상담카드

학 교		학년 반		성 명		담 임	
주 소							
집전화		휴대폰 (본인)		휴대폰 (부)		휴대폰 (모)	
친한 친구 1				친한 친구 2			
성 명		휴대폰		성 명		휴대폰	
사안		발생 일시		징계 내용		징계 완료	
년도	월 일	상담 기록				학교 적응도	상담요원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기타							

심층 상담 카드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이름 :	
기초 항목	내 용	상담자
가족 사항	부모	
	형제	
꿈(비전)		
특 기		
적 성		
취 미		
관심 있는 교과		
심층 상담	내 용	
부모님과 의 관계 (형제자매 포함)		
학생의 관심		
학교생활의 기본 태도		
선생님과 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